

의안번호	2220380
의 퇴 인	김문수의원
회 답 일	2026.08.28.
추계번호	26C3540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 (안전조치 및 안전 사고관리 지침 등)	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 <u>고를 예방하고,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</u>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<u>마련하여야</u> 한 다(제3항).	의무규정
2	안 제10조의5 신설 (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)	학교장,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 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 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(「형법」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)을 지지 아니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 (안전조치 및 안전사 고관리 지침 등)	○ (미대상) 현행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1)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○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, 동 지침에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○ 그러나, 현재 해당 지침은 교육부 고시²⁾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 안에 따른 지침 개정 등은 기존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2	안 제10조의5 신설 (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·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.

2) 「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」(교육부고시 제2025-19호)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, ②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, 교직원 및 보조인력(이하 “학교장등”)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
 - 현행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³⁾은 학교장등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면책 요건으로 규정하여 경과실이 있는 학교장등도 민·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
 -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장등의 책임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부담이 증가하고 공제료가 인상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⁴⁾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·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,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- * [참고자료] 학교안전공제 사업 보상 범위 및 한도

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 ⑤ 학교장,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4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(이하 “학교안전공제”라 한다) 사업을 실시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.

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. 다만,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

- 현재 학교안전공제의 보상·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나,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장등의 책임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
- 그러나, 향후 책임 면제로 발생할 재정부담 증가분 및 손실보전 방식 등의 추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, 경과실에 따른 사고 건수 및 배상 범위 등이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학교안전공제 사업 보상 범위 및 한도

구분	학교배상책임공제		학교안전공제	
사업 근거	학교안전법 제29조제1항제6호		학교안전법 제11조제1항	
사업 주체	학교안전공제중앙회		시·도학교안전공제회	
보상 범위	제3자가 인적·물적 피해	○ 인적 손해: 사고당 20억원 ※ 1인당 부상 3천만원, 사망·장해 1억5천만원	요양급여	○ 급여 전액 및 비급여 일부 항목 ○ 간병료: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○ 간병 부대경비: 1일당 2만원
		○ 물적 손해: 사고당 1억원		
	학생 휴대품의 분실·파손	○ 휴대폰 파손/분실: 1대당 200만원 ※ 1학교당 연 2천만원	장해급여	○ 일실수익 및 위자료
			간병급여	○ 상시: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○ 수시: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2
	학교장 대상 과태료	○ 급식 과태료: 사고당 500만원	유족급여	○ 일실수익 및 위자료
			장의비	○ 평균임금의 100일분
		기타(위로금)	○ 4,000만원	
공제료	학생 1인당 350원		시·도별로 책정	

자료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·도학교안전공제회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